

○ 지원유형 및 예시

분류	목적	예시
① 기술검증형	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나 솔루션을 현장 인프라 및 시스템 환경에 결합하여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 #혁신기술 #시솔루션 #실제테스트	AI기업과 패션 플랫폼사와 협력하여,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, 기상피팅 등 연동하여 쇼핑 편의성 개선
② 시장검증형	제품화 단계 직전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 고객 또는 특정 타겟 시장에 소규모로 노출하여 수요와 수용성 파악 #신규BM #소름전시 #시민체험	샘플제품이나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, 패턴 반영하여 출시
③ 문제해결형	수요기관이 해결하고 싶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제안·검증 #맞춤형솔루션 #시범운영 #소름전시	패션기업의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, 여러 브랜드사와 플랫폼사가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판매전 개최

지원규모 : 5개사/PoC 비용 기업당 최대 3천만원

○ 지원조건 : 기관부담금(현물 또는 현금, SBA 지원금의 100% 이상) 출자 의무

지원기간 : 3개월 ~ 5개월 이내

○ SBA-선정기업 간 협의를 통해 PoC 운영 기간 확정

추진방법 : 기업지원형 민간협력사업으로 PoC 운영

S B A	참여기업
<p><u>전시·체험공간 및 PoC 사업비 지원</u></p> <p>① (기업관리)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 ② (자원지원) 사업비 및 실증공간 지원 ③ (공간운영) PoC 전시공간 운영인력 배치</p> <p>※ 참여기업 상주인원 배치 불가</p>	<p><u>기술·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홍보</u></p> <p>① (기술개발) 혁신기술 개발 또는 BM 기획 ② (PoC홍보) 실증 위한 대상 확보 프로모션 등 ③ (성과창출) 실증 결과를 통한 추진성과 공유</p>

추진절차 및 일정(안) (※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
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참여기업 공개모집	6. 24.(수) ~ 7. 16.(목)	공고기간 23일
선정평가위원회 개최	7. 20.(월) ~ 7. 28.(화)	서류(1차)→발표(2차)
선정 결과 공지	7. 29.(수)	
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	7. 30.(목) ~ 8. 7.(금)	
PoC 운영	8월 ~ 12월(5개월)	운영기간 협의
결과보고 및 정산	~ '27년 1월	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

2

모집 개요

- 모집기간 : 2026. 6. 24.(수) ~ 7. 16.(목) 15:00
- 모집규모 : 5개사 / 기술·BM 검증 비용 기업당 최대 3천만원
- 모집분야 : 패션·아트·라이프스타일 분야
- 모집대상 : 혁신 기술 또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등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

◆ 신청자격(모두 해당)

-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
- ② 패션·라이프스타일 분야 접목가능한 S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하고거나 DDP쇼룸 내 실증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,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기업
- ③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등 직접투자가 가능한 기업

✦ 제외 대상

- ① 공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
-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 - ▶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-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 - ▶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
 - ▶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
 - ▶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

- 신청방법 :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✦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

- ①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sba.seoul.kr/>) 기업회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② [사업신청] > '2026년 DDP 쇼룸 패션기업 PoC 지원 모집공고' 클릭
- ③ 게시글 하단의 **[신청하기]** 버튼 클릭
- ④ 게시글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 - ▶ 용량 30MB 제한, zip파일로 업로드, 제출 파일명 '신청서_기업명.zip'으로 통일
- ⑤ 최종 확인 후 하단의 **[제출]** 버튼 클릭

제출서류 목록

연번	제출서류
1	사업신청서 및 별첨서류 일체(양식1)
2	PoC 계획서(양식2)
3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중소기업확인서(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)
4	경영실적 증빙서류 - 전년도 재무상태표, 전년도 손익계산서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)
6	(요청시)PoC 계획서 내용증빙 및 참고자료

3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
평가기간 : 2026. 7. 20.(월) ~ 7. 28.(화) (※ 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)

평가절차 : (1차) 서류평가 → (2차) 발표평가

※ 신청기업수가 모집 규모의 2배수 이하인 경우, '(1차) 서류평가'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

평가위원 : 산업분야(패션·아트·라이프스타일) 및 경영·기술·전시 외부 전문가 7인
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[서류평가] 제출한 PoC 계획서 서면 검토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

○ 선정기준 : 평가결과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(10개사)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정성 (90)	사업 역량 (30)	- 사업 목표와 실증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	10
		- 사업 목적이 지원유형 및 DDP 소름 공간 특성·비전에 부합하는가	10
		- 사업비 규모와 세부 예산항목·비용은 적정한가	10
	기업 역량 (20)	-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	10
		-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	10
	기술·BM 역량 (20)	-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 또는 사업모델인가	10
		-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완성도 있는 기술 또는 사업모델인가	10
	협업 역량 (20)	- 협업 가능한 우수 브랜드·IP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	10
		- 브랜드·IP 등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는가	10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									
정량 (10)	기업 경영상태 (5)	- 기업 전년도 매출액(매출실적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70억 이상</th> <th>40억 이상</th> <th>10억 이상</th> <th>10억 미만</th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.5</td> </tr> </table> <p>※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</p>	구분	70억 이상	40억 이상	10억 이상	10억 미만	배점	5	4.5	4	3.5	5
	구분	70억 이상	40억 이상	10억 이상	10억 미만								
배점	5	4.5	4	3.5									
	기업 건전성 (5)	- 기업 전년도 부채비율(타인자본/자기자본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100% 미만</th> <th>200% 미만 100% 이상</th> <th>300% 미만 200% 이상</th> <th>300% 이상</th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.5</td> </tr> </table> <p>※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</p>	구분	100% 미만	200% 미만 100% 이상	300% 미만 200% 이상	300% 이상	배점	5	4.5	4	3.5	5
구분	100% 미만	200% 미만 100% 이상	300% 미만 200% 이상	300% 이상									
배점	5	4.5	4	3.5									
총 계			100										

※ 동점 시 ① 기술·BM 역량 > ② 사업 역량 > ③ 기업 역량 순서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,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

[발표평가] PoC 계획서 기반 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

○ 선정기준 : 평가결과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※ 서류평가 추진에 따라 정해진 발표평가 대상에게는 개별 연락(이메일 또는 유선) 예정

※ 신청기업이 진행 도중 지원을 포기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확인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대상 선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(안)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정성 (100)	사업 역량 (30)	- 사업 목표와 실증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	10
		- 사업 목적이 지원유형 및 DDP 소름 공간 특성·비전에 부합하는가	10
		- 향후 몇 년 이내 실증을 통한 사업화 성과가 기대되는가	10
	기업 역량 (25)	-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	10
		- 향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만한 요소를 갖추었는가	10
		-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·PM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는가	5
	기술·BM 역량 (25)	-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 또는 사업모델인가	10
		-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완성도 있는 기술 또는 사업모델인가	10
		- 사업화를 통해 확장 가능한 기술 또는 사업모델인가	5
	협업 역량 (20)	- 협업 가능한 우수 브랜드·IP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	10
- 브랜드·IP 등 협업을 통한 실증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		10	
총 계			100

※ 동점 시 ① 기술·BM 역량 > ② 사업 역량 > ③ 기업 역량 순서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,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

결과발표 : 최종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SBA 홈페이지 공고 예정

4

선정 후 절차

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

- [기획협의] 실증기간·공간 확정 및 톤앤매너 유지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 협의
- [협약체결] 협약기간, 상호간 역할, 사업비 지급, 정산 등에 관한 협약 체결
- [지원금 지급]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
 -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시 사업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- '붙임1. 모집공고문'에 별첨된 [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]에 따라 집행

PoC 공간 조성 및 운영(실증공간 사용시)

공간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·비즈니스모델 시연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시, 스테이지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동 가능한 가변형으로 DDP 쇼룸과 톤앤매너를 맞추어 조성 - DDP 쇼룸내 공간 활용시 해당 공간의 목적·타겟에 맞게 SBA와 사전 협의 후 확정 ※ 시민안전 및 사고사례 발생 시 대응 위한 행사보험 가입 필수(협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)
공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DDP쇼룸 내 상주인력 SBA 직접배치(참여기업 인력 배치 불가) · 브랜드, IP 등 협업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 · 참여기업이 실증기술과 연계된 상품·서비스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SBA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, 규정에 따라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SBA에 납부해야 함

결과 및 정산 보고

- [중간 보고] 필요시, 협약기간 중간 시점에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중간 보고 요청
- [결과 보고]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및 성과 홍보 추진
- [사업비 정산] SBA 지정 공인회계법인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잔액·이자 반납

5

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SBA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실증공간 사용시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시민안전 및 사고사례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

하며 가입기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함

-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
- SBA와 선정기업이 체결한 사업의 내용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

6 문의처

- 서울경제진흥원 패션기업육성팀(02-6951-2578, ehshim@sba.seoul.kr)

□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

구분	비목	세목	사용기준
인건비	인건비		-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 반영 ※ 총 지원금의 20% 이내
직접비	개발비		- 비즈니스(서비스) 모델 기획 및 디자인, UI/UX 개발 등 - 실증 기술 개발, 콘텐츠 변경, 클라우드 사용료 등 - 시제품 설계 및 구현, 시범 시스템의 기술 검증 비용
		시공비	- 전시 부스 제작, 인테리어 등 - 사업기간 중 렌탈료(구매·제작하는 경우 총 내구연한 중 사업기간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 가능) 등
	사업 활동비	제경비	- 이행보증보험증권, 회계정산수수료, 행사보험료(공간사용시 필수가입) 등
		홍보비	- 본 사업과 연계한 온·오프라인 행사, 광고 등
기타 활동비		- 회의비, 추진비 등 - 설명회, 기업 네트워크 행사 등	
간접비	기타운영비		- PoC 사업과 관련된 간접비용(기관 공통경비 등) ※ 총 지원금의 10% 이내

□ ‘기관부담금’ 계상기준

- ‘기관부담금’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, 선정기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.
- ‘기관부담금’ 중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,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율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‘기관부담금’ 중 장비,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선정기업이 본 사업 참여 전부터 소유·임차·사용대차하고 있는 장비·부동산의 구입가 20% 내에서 계상 가능하며, 사업 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 컴퓨터, 워크스테이션 등 범용성 장비는 계상할 수 없다.
- ‘기관부담금’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, 검토 결과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

□ 사업비 지급 및 사용

-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다.
- 선정기업은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,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.

□ 사업비 정산

- 사업종료시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SBA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정산은 선정기업이 현물로 계상한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선정기업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.
- 선정기업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되지 않을 시 불인정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.
-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갈음하고,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불인정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,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.
- 선정기업이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,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

★ [참고]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
<별표 2>

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
(2026년 기준)

등 급	월 임금
책임연구원	월 3,783,728원
연구원	월 2,901,312원
연구보조원	월 1,939,429원
보조원	월 1,454,621원

주 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
주 2)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,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“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”(국가데이터처 발표)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
★ [참고] 회계감사를 위한 위탁 정산 수수료 기준

- 회계감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정산 실시 후 회계정산보고서 제출하며 SBA 지원 사업비 외 협력사의 현물, 현금 출자 내역도 정산 항목에 포함됨
- 회계감사를 위한 위탁 정산 수수료는 SBA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, 예산서에 편성하기 바라며, 표준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음.

[위탁정산 수수료]

사업비 규모	정산수수료(원)	비고
5천만원 미만	550,000	부가세 포함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700,000	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900,000	